

플레이어 행동 수칙

강원특별자치도골프협회(이하 GWGA)에서는 골프 규칙 1.2b에 따라 플레이어 행동 수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 플레이어가 행동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위원회는 위반 행동에 대한 경중을 판단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. 대회기간 동안 동일한 행동 수칙을 다시 위반하거나 다른 행동 수칙을 추가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 단계의 페널티를 부과한다.

제1항. 행동: 플레이어의 행동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, 위원회는 제4항을 적용하여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.

- ☐ 거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☐ 클럽을 망가뜨리거나 던지는 행동
- ☐ 다른 플레이어, 레프리, 갤러리 또는 관계자에 대해 불쾌감을 주거나 무례한 언행
- ☐ 대회 시설물, 코스를 손상시키는 행동
- ☐ 벙커를 고르지 않는 등 코스 보호를 게을리하는 행동
- 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약물 복용, (성)폭력, 음주 또는 흡연(만 19세 미만 청소년) 행위 :
(매우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)

제2항. 복장: 복장은 단정하여야 하며 해당 골프장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.

제3항. 선수 보호자: 복장은 단정하여야 하며 해당 골프장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.

(선수 보호자 또는 갤러리가 연관된 행동 수칙 위반에 대한 판단: 위원회에서는 플레이어가 그 위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다.)

제4항. 페널티: 행동 수칙에 관련된 재정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위원회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.

- ☐ 1단계 - 경고
- ☐ 2단계 - 일반 페널티(매치플레이 - 홀 패, 스트로크플레이 - 2벌타)
- ☐ 3단계 또는 매우 부당한 행동 - 실격

주1) 홀과 홀 사이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서 일어난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홀 또는 다음 라운드에 그 페널티를 적용한다. 주2) 개인 캐디를 사용하는 경우, 그 캐디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플레이어에게 있다.

제5항. 위원회의 결정: 위원회는 위에 나열된 행동 수칙 위반이 발생한 경우 '매우 부당한 행동'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며,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. 만약 위원회에서 'GWGA 스포츠공정위원회'에 회부하여야 할 위반의 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, 해당 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GWGA 집행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